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204
2026.11.23.



한·중 FTA 10년 만에 전환점… 서비스·투자 개방 확대

[이주의 초점]
APEC 계기 정상회담서 후속협상 실질타결… K-영화·게임 최혜국대우 (4p)

[위클리뉴스]
UAE로 중고차 수출 시 원산지증명 간소화
英, 11월 26일부터 농식품·비료·등유 수입관세 0%… 한국 수출기업 영향은 (8p)

[오피니언: 미국 통관]
미국 법인이 있어도 '외국 수입자' 된다? 2027년 1월 5일 시행 '미국 수입자 요건 강화' 점검 사항 (13p)

[관세행정]
국내산 원산지증명제도의 이해: 원산지 판정 유의사항 (19p)

[품목분류 동향]
'AI 커닝' 논란의 '스마트 안경' 품목분류는 어떻게 될까? (28p)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AI 생성 이미지

발 행 인 김종호
편 집 인 남성훈

총 괄 김민정

취 재 강보람 aorigaski@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김다솔 kds5817@kctdi.or.kr

마 케 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 자 인 경성문화사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6년 11월 23일(통권 제2204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C O N T E N T S



<알립니다>
통권 제2205호는 12월 7일 발행됩니다.
▲11월 30일 : 휴간, ▲12월 7일 : 제2205호, ▲12월 14일 : 제2206호

이주의 초점

04 한·중 FTA 10년 만에 전환점…
서비스·투자 개방 확대

08 Weekly News

오피니언동향

13 **미국 통관**

미국 법인 있어도 '외국 수입자' 될 수 있다

박주현 법무법인(유) 율촌
대한민국·미국 변호사

관세행정실무해설

19 **관세행정안내**

[국내산 C/O] 국내산 원산지증명제도의 이해

이득렬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관세사)

품목분류동향

28 **품목분류해설**

'AI 커닝' 논란의 스마트안경 품목분류는 어떻게 될까?

김성채 PwC 관세법인

37 **세번 바로잡기**

토끼털 목도리의 HS Code

이영주 중앙관세분석소

한·중 FTA 10년 만에 전환점
서비스·투자 개방 확대

APEC 계기 후속협상 실질타결… K-영화·게임 최혜국 대우

한국과 중국이 8년 8개월간 이어온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타결했다. 2015년 한·중 FTA 발효 당시 후속과제로 남겨뒀던 서비스·투자 시장의 개방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11월 19일 중국 선전에서 진행된 APEC 정상회의 세션(출처: 청와대)

산업통상부는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를 계기로 11월 18일 진행된 韓·中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FTA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콘텐츠·관광·법률·유통·건설·금융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 규범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기술적 문안 협의와 법률검토, 정식서명 및 발효 절차가 남아 있다.

기존 FTA는 상품 중심… 서비스·투자 개방은 후속과제로

2015년 12월 20일 발효한 한·중 FTA는 상품 관세 인하에 중점을 뒀다. 산업부의 2015년 6월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전체 품목의 약 91%, 한국은 약 92%에 대해 최장 20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서비스 분야는 개방 업종을 양허표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해 지역·사업유형 등에 제한이 남았다. 양국은 원협정 부속서에서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발효 후 2년 이내 시작하고 개시 후 2년 이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 3월 협상 개시 이후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열리지 못했다. 올해 1월 정상회담에서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고위급 협의가 이어졌고, 협상 개시 8년 8개월 만에 실질타결에 도달할 수 있었다.

양국의 FTA 발효 이후 교역구조는 달라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對중국 상품교역액은 2,729억달러로 전체 상품교역의 20.7%를 차지했지만, 서비스교역액은 388억달러로 전체 서비스교역의 12.4%에 그쳤다.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함께 한국 제품의 중국 시장점유율은 낮아지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중국거시경제연구원의 궈춘리(郭春丽) 부원장은 8월 27일 韓·中 경제포럼에서 기계·전자제품과 첨단기술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의 수출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월 발간한 '대한상의 경제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2018년 9.6%에서 2023년 6.3%로 하락했다. 중간재 점유율은 14.6%에서 11.1%, 자본재는 10.5%에서 6.2%로 떨어졌다. 보고서 저자 박가희 연구위원은 중국의 핵심 부품 국산화와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주요 변화로 짚었다.

콘텐츠 심사 비차별 원칙 도입… 여행업 진출지역도 확대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영화·게임에 대해 한국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의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이 이러한 약속을 통상협정에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대상은 기존 영화에서 드라마·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넓어진다. 다만 심사제도가 폐지되거나 한국 콘텐츠의 현지유통이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중국 시장 진출 시

관련 법령과 심사절차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관광업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현지 거주 중국인과 외국인의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는 한국 여행사가 K-팝·뷰티·푸드 등과 연계한 방한 관광상품뿐 아니라 일본·동남아 등 제3국 여행상품으로도 사업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률·유통·건설시장 개방 확대… 시장개방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사무소 설립지역은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 Free Trade Zone)에서 톈진·첸하이 FTZ와 하이난 자유무역항(FTP, Free Trade Port)까지 확대된다. 공동사업의 서비스 대상 고객은 중국 전역으로 기존과 같지만, 사무소 설립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유통업체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은 원협정에 열거된 프로젝트 유형 제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서비스에는 중국이 향후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추가 개방을 약속하면 한국에도 같은 혜택을 주는 미래 최혜국대우가 적용된다.

한국 역시 韓·中 로펌 간 업무제휴, 건설장비 대여·임차, 영화 상영 서비스 등 법률·유통·시청각 등에서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약속했다.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방식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제한사항을 유보목록에 기재하는 방식**이다. 유보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제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역진방지(ratchet) 원칙도 도입한다.

투자자 보호 규정도 강화했는데,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강제하지 않기로 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협정에 명시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보호 범위는 투자 설립 전 단계까지 확대하되, 근거 없는 청구의 조기 각하와 중복제소 제한 등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실질타결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졌다. 한편, 11월 19일(현지시간) APEC이 진행된 중국 선전에서 열린 美·中 정상회담에서도 통상 현안이 논의됐지만, 내년 1월 10일

만료되는 무역휴전의 연장 합의와 관련된 사안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같은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라고 평가한 점에 주목하면서, 반도체 규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도 양국이 무역휴전을 유지하려는 신호로 해석했다.

美·中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 한·중 FTA 후속협상이 실질타결되며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 범위와 투자자 보호 규범이 구체화됐다. 산업부는 기술적 문안 협의와 법률검토를 거쳐 정식서명 및 발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은 기자 |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주요 변화

구분	기존 협정(2015년 발효)	2026.11. 후속협상 합의
시장개방 방식	포지티브 방식(개방 분야 양허표에 명시)	네거티브 방식, 역진방지 원칙 도입
콘텐츠(영화·게임)	이번 합의에 해당하는 약속 없음	최혜국대우·사전심사 비차별 원칙 적용
시청각 공동제작	영화 공동제작 규정	드라마·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
여행업	중국인 해외여행 알선 관련 이번 합의 수준 개방 약속 없음	중국 23개 지역(11개 시범구, 12개 지역 FTZ) 설립 한국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관광업 허용
법률	韓·中 로펌 공동사업 위한 한국 로펌 설립지역 상하이 FTZ로 한정	톈진·첸하이 FTZ, 하이난 FTP(하이난 전역)로 설립지역 확대
유통	30개 초과 점포 체인의 특정 상품 유통에 지분 제한	30개 이상 매장 운영 시 중국 기업과 합작 없이 독자 운영 가능
건설	참여 가능 프로젝트 유형 5개로 제한	프로젝트 유형 제한 삭제
금융	후속협상에 미래 최혜국대우 논의 명시	미래 최혜국대우 적용 약속
투자 이행요건	수출·기술이전 관련 비합리적·차별적 조치 부과 금지	기술이전 강요 등 투자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 명시
ISDS	투자 설립 이후 단계 보호	설립 전 단계까지 보호, 근거 없는 청구 조기 각하·중복제소 제한 도입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2026.11.18.),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2015.6.), 한·중 FTA 협정문(정리: 주간 관세무역정보)

UAE로 중고차 수출 시 원산지증명 간소화

차대번호로 국내 제조 사실 확인

앞으로 국산 중고자동차를 아랍에미리트(UAE)로 수출할 때 제조사의 원산지 소명자료 없이 차대번호만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복잡한 원산지증명 절차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혜관세를 활용하기 어려웠던 중고차 수출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11월 18일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고차를 수출할 때도 신차와 동일하게 세번변경기준(CTH, Change in Tariff Heading)이나 부가가치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해야 했다. 중고차 수출업체는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나 원가자료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재경부는 **제조사의 별도 원산지 소명자료 없이 차량 고유식별번호인 차대번호만으로 국내 제조 사실을 확인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차대번호는 자동차마다 부여되는 17자리의 고유번호로 제조국과 제조사, 생산연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리나 부품 교체가 있어도 완성차의 세번변경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자율발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세관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만 적용**한다.

재경부는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7년 3월 공포하고 4월 1일부터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는 걸프협력이사회(GCC) 등 다른 FTA 체결국과도 중고차 원산지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김다솔 기자 |

국산 중고자동차 수출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월 누계
수량	39만 4,819대	62만 5,133대	61만 7,908대	86만 6,395대	49만 3,594대
금액	28억 884만달러	45억 6,113만달러	48억 4,364만달러	81억 598만달러	43억 5,520만달러

자료: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투르크메니스탄과 세관 협력··· 불법무역·통관애로 대응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이 11월 15일부터 발효됐다. 이번 협정으로 양국 관세당국 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불법무역 단속과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양국은 지난 9월 15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통관 지연·불허 내용·근거 제공 등 상호 협조 제공, ▲관세범죄 및 마약 불법거래에 관한 정보 교환, ▲관세당국 간 기술적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간 교역은 2021년 886만 4,000달러에서 2025년 4,523만 3,000달러로 5배 증가했다. 2025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류, 자동차 및 부분품, 철강제품, 기기류 순이다. | 김다솔 기자 |

한국 수출 1조달러 첫 돌파··· 세계 네 번째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독일·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2007년 중국 이후 19년 만에 탄생한 새로운 수출 1조달러 국가다. 정부는 11월 19일 오후 2시 9분 38초 기준 잠정 집계한 올해 누적 수출액이 1조달러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000억달러를 달성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기록은 세계 교역환경이 달라진 가운데 달성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독일과 미국은 2006년, 중국은 2007년 세계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던 시기에 달성했다. 반면 한국은 美·中 무역분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세계 교역의 분절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같은 기록을 세웠다.

올해 수출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컴퓨터 수요 증가가 주도했다. 석유제품·선박·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 품목도 수출 증가에 힘을 보탰으며, 화장품·농수산식품·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1~10월 20대 수출품목 중 16개 품목의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다.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정부는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반도체·석유제품의 수출단가 변동성,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을 향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내년에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로봇 등 신산업 육성과 소비재 해외 판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김성은 기자 |

신선농산물 단일 품목 1억달러 첫 달성, 포도가 해냈다

포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억달러를 넘기며 신선농산물 단일 품목 수출의 새 기록을 세웠다. 정부는 해외 판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북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1월 16일 '포도 수출 1억 달러 달성 기념 선적식'을 개최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샤인머스캣 40피트 컨테이너의 출하를 기념했으며, 해당 물량은 11월 18일 부산항을 통해 출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에 목표액인 1억달러를 돌파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6년 1~10월 우리나라의 포도 수출액은 9,066만 2,000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인 8,540만 3,000달러를 넘어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가별 최대 수출시장은 대만이다. 2026년 1~10월 대만 수출액은 5,130만 2,000달러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이어 미국(1,644만 2,000달러), 홍콩(587만 달러), 베트남(472만 달러) 순이다. 이 같은 수출 확대에 힘입어 올해 신선포도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했다.

| 김다솔 기자 |

특허심사 '신속결정' 도입··· 최종 심사결과 2개월→1개월

특허출원 과정에서 심사관이 특허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술 항목만 남기면 최종 심사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우선심사 중인 특허의 최종 심사결과 통지기간이 기존 2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부터 심사관과 출원인 간 쟁점이 없는 특허출원을 우선심사하는 '신속결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심사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통지받은 청구항만 남도록 보정하고 기간단축을 신청할 경우 신속결정 대상이 된다. 이번 신속결정 제도는 우선심사 중인 특허출원부터 적용하며, 최종 심사결과를 1개월 이내에 통지한다. 일반심사 중인 특허출원 신속결정은 검토를 거쳐 이르면 2027년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도입 시 최종 심사결과 통지기간은 6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한편, 지재처의 '2025 지식재산 통계연보'에 따르면, 특허출원 건수는 2022년(23만 7,633건)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부터 2025년(26만 797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 김다솔 기자 |

英, 11월 26일부터 농식품·비료·등유 수입관세 0%

영국이 중동 전쟁에 따른 자국민의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식품과 비료, 등유의 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앤다. 한국 수출기업도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영 FTA에 따라 이미 무관세로 수출하는 제품은 추가 혜택이 없다.

영국 기업통상부(DBT, 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가 10월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26일부터 농식품 101개 품목과 등유의 기본 수입관세율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0%로 낮아진다. 비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무관세가 적용된다.

영국은 지난 6월 과일·과일주스, 파스타, 쿠스쿠스, 참치 등 농식품을 대상으로 제1차 관세 정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와의 무역협정이 아닌, 영국 정부가 기본 수입관세율을 한시적으로 0%로 낮추는 방식이다. 러시아·벨라루스산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상 물품에 수량 제한 없이 적용되지만, 부가가치세(VAT)와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관세는 그대로 부과된다.

영국의 농식품 수입관세 0% 대상에는 신선 채소와 과일, 초콜릿, 과자류, 잼, 식물성 음료

등이 포함됐다. 기존 기본관세율은 신선·냉장 가지 12%, 일부 초콜릿과 식물성 음료 8% 등이었다. **농식품 외에는 비료와 등유가 대상이다.** 기존 기본관세율 4%가 적용되던 등유는 난방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관세로 전환된다. 요소·황산암모늄·복합비료 등 비료의 기존 기본관세율은 품목별로 2~6.5%다. 영국 정부는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고려해 비료를 포함했으며, 관세 정지 종료 전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5 농식품 수출국가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국산 식품의 대영국 수출액은 1억 3,001만달러로 전년 대비 26.4%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라면(비중 39.4%), 조미김(12.4%), 김치(5.6%) 등이며, 그밖에 기타 무알코올 음료와 속을 채운 파스타, 베이커리 제품도 포함됐다.

이번 **관세 정지 대상과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비교하면 식물성 음료와 제과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대두·견과류·곡물 등을 원료로 한 일부 식물성 음료(제2202.99.11호, 제2202.99.15호)와 일부 초콜릿(제1806.31.00호 등)과 초콜릿을 입힌 와플·웨이퍼(제1905.32.19호), 캔디·캐러멜류(제1704.90.71호, 제1704.90.75호)를 무관세 대상에 포함했다.

한·영 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 이미 0%의 특혜관세율을 적용받는 제품은 추가적인 관세 절감 효과가 없다. 반면 FT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관세율을 적용받던 제품은 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영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도 0%가 적용될 수 있어 한국산의 가격 우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에 수출기업은 영국 수입신고 품목번호와 기존 적용 관세율, FTA 원산지 요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김성은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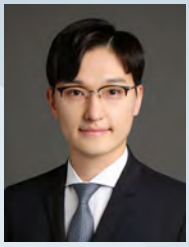
영국의 주요 수입관세 한시적 정지 품목

주요 품목	영국 품목번호	기존 기본관세율
신선·냉장 가지	제0709.30.00호	12%
신선·냉장 마늘	제0703.20.00호	8%+100파운드/100kg
베이크드빈 등 조제 콩류	제2005.51.00호	16%
일부 초콜릿 제품	제1806.31.00호	8%
초콜릿 코팅 와플·웨이퍼	제1905.32.19호	8%
토피·캐러멜류	제1704.90.75호	8%
녹차(3kg 이하 포장)	제0902.10.00호	2%
일부 식물성 음료	제2202.99.11호, 제2202.99.15호	8%
등유	제2710.19.25호	4%
비료(요소·황산암모늄·복합비료 등)	세부 품목별 상이	2~6.5%

표의 관세율은 관세 정지 전 기본관세율이며, FTA 특혜관세율과 다를 수 있음[자료: 영국 기업통상부(2026.10.28.)]

미국 법인 있어도 '외국 수입자' 될 수 있다

2027년 1월 5일 시행 '미국 수입자 요건 강화' 점검사항



박 주 현
법무법인(유) 율촌 대한민국·미국 변호사

Ⅰ. 들어가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2026년 11월 6일 '외국 수입자 요건 강화(Heightened Requirements for Foreign Importers of Record)' 규칙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1] 2026년 6월 3일 서명된 '행정명령 제14411호(관세집행 강화)'의 후속 조치로[2], 2027년 1월 5일 시행된다. 의견 제출 마감일도 같은 날이다.

미국에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는 자를 수입자(IOR, Importer of Record)라 한다. 새 규칙은 IOR을 '미국 수입자'와 '외국 수입자'로 나누고, **외국 수입자는** 미국 세관의 공급망 보안 프로그램인 대테러 세관·무역 파트너십(CTPAT,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의 검증을 받았거나 **CTPAT 검증을 받은 미국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를 지정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1)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eightened Requirements for Foreign Importers of Record, Interim Final Rule, 91 Fed. Reg. 69977, 2026.11.6.(federalregister.gov) 참조. 19 C.F.R. 조문은 위 규칙에 따른 개정 후 조문이다.
2) Executive Order 14411 of June 3, 2026,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 91 Fed. Reg. 35125, 2026.6.10. (govinfo.gov) 참조

그러나 '미국 수입자'인지는 회사를 어디에 설립했는지로 정해지지 않는다. 미국에서 설립된 현지법인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외국 수입자가 된다. CBP는 외국 수입자가 전체 IOR의 약 16%이고, 그중 약 3분의 1은 CTPAT 검증을 받은 관세사로 바꾸거나, 직접 CTPAT 검증을 받지 않으면 시행일 이후 수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추산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해당 규칙 시행 전에 점검할 사항을 현지법인,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거래, 증빙과 등록 정보의 순서로 정리한다.

Ⅱ. '외국 수입자 요건 강화' 주요 사항

1. 도입 배경

CBP가 외국 수입자를 겨냥한 이유는 징수의 어려움이다. 외국 수입자와 그 자산은 대부분 미국 외부에 있어 관세 추징이나 벌금이 확정돼도 거두기 어렵다. 규칙 서문에 따르면 CTPAT 검증을 받지 않은 외국 수입자에게 2020년 10월 이후 고지한 금액 중 아직 걷히지 않은 원금이 2026년 2월 기준 10억 1,000만달러에 이른다. 감사로 확인된 세수 손실의 회수율도 외국 수입자는 3.1%로 미국 수입자(15.2%)보다 크게 낮았다. 보증(bond)은 한도가 차면 손실을 모두 메우지 못한다. 참고로 미국 당국은 이 밖에 저가신고, 품목분류 오류, 원산지 허위신고, 우회수출, 허위 송장 문제도 새 규칙의 도입 이유로 들었다.

2. 미국 수입자 요건

개인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여야 한다. 법인은 미국 법에 따라 설립돼 미국에 소재해야 하고,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하나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중 51% 이상이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이면서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담보 등 부담을 제외한 가치가 상당한 규모의 미국 내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다. 수익적 소유자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 또는 지배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수익적 소유자 정의를 바탕으로 한 개념이다.[3)]

3) 19 C.F.R. § 110.1, § 110.2, § 110.3 및 31 C.F.R. § 1010.380(d) 참조

CBP는 미국 수입자에 해당하는지 검증할 수 있다. 이때 ▲주된 영업소가 미국에 있는지, ▲미국 내에서 실질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물리적 거점이 있는지, ▲예금·재고·설비 등 부담이 없는 미국 내 자산이 충분한지, ▲미국 내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는지, ▲총매출이 대체로 매출원가를 넘는 등 독자적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인지, ▲자본이 충분한지를 본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IOR은 모두 외국 수입자가 된다.[4)]

3. 외국 수입자 제한 강화

외국 수입자는 CTPAT 검증을 받은 경우에만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검증을 받지 않았다면 CTPAT 검증을 받은 미국 관세사를 지정해 수입신고를 맡겨야 한다. 외국 수입자가 물품의 소유자나 구매자가 아니면 그 관세사가 직접 IOR이 돼야 한다. 미국 수입자는 수입신고 때마다 그 자격을 신고해야 한다. 행정명령에는 외국 수입자의 간이통관(Informal Entry)을 금지가 포함됐지만, 새 규칙은 전면 금지를 보류하고 시행 후 외국 수입자의 간이통관을 점검해 필요하면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간이통관도 CBP 서식 3461호 또는 7501호(CBP Form 3461 or 7501)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제한을 받는다.

Ⅲ. 첫 번째 점검: 미국 현지법인이 '미국 수입자'인가

1. 설립지역이 아닌, 최종 소유자가 기준이다

미국 현지법인을 IOR로 쓰는 기업이 먼저 볼 것은 수익적 소유자 요건이다. CBP는 여러 단계의 지분 구조를 거슬러 올라가 최종적으로 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질적 지배자에는 대표 등 고위 임원, 이들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가진 자, 사업·재무·조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가 포함된다. 한국 본사가 지분을 모두 가진 현지법인이라면, 본사의 최종 소유자와 법인장 등 주요 임원이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한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그러면 부동산 요건이 남는데, '상당한 규모'의 금액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사무실과 물류창고를 임차해 쓰는 판매법인은 미국에서 설립돼 영업하고 있더라도 두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외국 수입자로 분류될 수 있다. 미국 수입자 요건은 항상 유지돼야 하므로, 지분 변동이나 경영진 교체, 부동산 매각으로도 수입자 지위가 바뀔 수도 있다.

4) 19 C.F.R. § 141.21, § 141.22 참조. 외국 수입자의 CTPAT 검증 가능 범위에 관해서는 91 Fed. Reg. 69977 참조

2. CTPAT 검증 여부가 결론을 바꾼다

외국 수입자로 분류되더라도 CTPAT 검증을 받은 IOR은 지금처럼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지법인이 검증을 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검증 받지 않은 외국 수입자라면 거래하는 관세사가 CTPAT 검증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검증을 받지 않은 관세사는 2027년 1월 5일부터 그 법인의 수입신고를 맡을 수 없다. 시행일까지 CTPAT 검증을 받은 관세사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Ⅳ. 두 번째 점검: DDP 수출은 수입 방식을 정해야 한다

1. 직접 수입자가 되는 수출자는 외국 수입자다

DDP에서는 수입통관과 관세 납부가 매도인의 몫이다. 때문에 한국 수출자가 비거주 수입자(Non-resident Importer)로서 미국에서 IOR이 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 물류창고에 재고를 두고 현지 소비자에게 팔기 위해 직접 통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때 한국 수출자는 외국 수입자이고, 캐나다 기업이 아니므로 CTPAT 검증을 받을 수도 없다.[5] 앞서 언급했듯이 2027년 1월 5일부터는 CTPAT 검증을 받은 관세사를 지정해야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선택지는 세 가지다. 첫째, **CTPAT 검증을 받은 관세사를 지정해 지금 구조를 유지한다.** 둘째, **인도조건을 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 등으로 바꿔 미국 고객을 IOR로 세운다.** 셋째, **요건을 갖춘 미국 법인을 IOR로 둔다.** 다만 미국 고객을 IOR로 세우더라도 그 고객이 외국 기업이 지배하는 법인이라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거래 규모, 고객과의 관계, 미국 내 자산 구조에 따라 다르다.

2. 수입자를 바꾸면 계약도 바뀐다

인도조건을 바꾸면 가격과 관세 부담, 통관 지연의 책임을 다시 정해야 한다. 게다가 IOR이 바뀌면 관세 납부와 환급, 사후 추징의 당사자도 바뀐다. 과거 수입 건에 대한 추징이나 환급이 남아 있다면 그 귀속도 함께 정해 둬야 한다. 관세사가 지는 책임도 커진다. 새 규칙이 관세사에게 확인 의무를 지우고 벌금 부과 근거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위임 범위와 수수료, 면책과 담보 조건이 협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5) 활성 상태 미국 수입자 또는 비거주 캐나다 수입자만 CTPAT에 가입할 수 있다.

Ⅴ. 세 번째 점검: 증빙과 IOR 등록 정보를 갖춘다

1. 관세사는 증빙을 요구하게 된다

새 규칙에 따라 미국 관세사는 고객을 미국 수입자로 신고하기 전에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자료로는 **시민권·영주권 증빙, 정관, 재무제표 등이 예시**돼 있고, **관세사는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관세사는 확인 의무의 이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지만, 늦어도 2027년 5월 6일까지는 이행해야 한다. 이 유예는 외국 수입자에 대한 제한에는 미치지 않는다.

수입자가 미국 수입자 자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CBP는 물품 반출 전에 세액정산 신고(entry summary)까지 마치도록 요구하거나 즉시반출(immediate delivery) 특권을 중단할 수 있다. 자격에 관한 판단은 수입자를 담당하는 CBP 전문센터(CEE, 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의 센터장이 한다. 관세사에게도 부정·과실 신고에 대해 미국 연방법전 제19편 제1592조(19 U.S.C. §1592)에 따른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처벌 기준에 명시했다.[6)]

현지법인은 지분 구조도와 최종 소유·지배자 자료, 미국 내 부동산 등기와 담보 현황, 재무제표를 미리 정리해야 한다. 관세사가 요청할 때 바로 제출할 수 있어야 통관이 멈추지 않는다.

2. IOR 등록 정보도 정비해야 한다

2026년 8월 19일 공고에 따라 CBP는 9월 18일부터 수입자 등록서(CBP Form 5106)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IOR 번호를 무효화하고 있다. 주소는 실제 사업장이어야 하고, 관세사나 등록대리인, 운송주선인의 주소와 사서함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메일과 전화번호도 수입자 본인의 것이어야 하고, 관세사의 위임장은 수입자와 직접 체결한 것이어야 한다.[7)] 무효화된 번호로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다. 무효화 통지는 등록된 이메일로 오고, 번호를 다시 쓰려면 CBP에 따로 요청해야 한다. 비거주 수입자로 등록하면서 관세사 주소를 기입했다면 바로 고쳐야 한다.

---

6) 19 C.F.R. § 111.23(b), § 111.29(a)(2), § 141.22(b), § 142.13(a)(5), § 142.25(a)(5), Part 171 Appendix B 참조
7)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ccuracy of Importer of Record Data Submitted to CBP, 91 Fed. Reg. 53627, 2026.8.19.(federalregister.gov) 참조

Ⅵ. 실무상 고려사항

새 규칙은 잠정최종규칙(IFR, Interim Final Rule)이다. 2027년 1월 5일 효력이 생기지만,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변경될 수 있다. 보류된 간이통관 금지도 다시 논의될 수 있다. 외국 기업이 지배하는 미국 법인의 판단 방법이나 '상당한 규모'의 기준처럼 불분명한 부분이 사업에 영향을 준다면, 2027년 1월 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CBP는 2026년 9월 2일 규칙 제정 사전공고(ANPRM, 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에서 수출국 세관에 제출한 수출신고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등을 수입신고 때 제출하게 하거나 보관하게 할지 의견을 구했다.[8] 이 방안이 채택되면 한국 수출자는 미국 고객에게 수출신고 자료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고객과의 계약에 정보 제공의 범위와 비밀유지를 정해 둘 필요가 있다.

Ⅶ. 맺으며

먼저, 한국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은 미국 거래 건별로 누가 수입자인지 목록을 만들고, 각 수입자가 미국 수입자인지 외국 수입자인지 판단해야 한다. 현지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와 부동산 요건, CTPAT 검증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외국 수입자로 분류되는 거래는 CTPAT 검증을 받은 관세사를 확보할지, 인도조건을 바꿀지 정한다. 그 결과에 맞춰 공급계약과 관세사 위임계약을 고치고, IOR 등록 정보를 바로잡는다.

시행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CTPAT 검증을 받은 관세사는 전체의 약 5분의 1에 불과하므로, 결정이 늦어질수록 관세사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이번 규칙의 영향은 미국 수입자 명의를 누구로 뒀는지에 따라 갈린다. 규칙이 의견 반영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만큼, 검토 결과에는 기준일을 적어 두고 후속 개정과 CBP 안내에 따라 갱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eightened Import Disclosures for Supply Chain Visibility, 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91 Fed. Reg. 56408, 2026.9.2.(federalregister.gov) 참조

[국내산 C/O] 국내산 원산지증명제도의 이해

이 득 렬 |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관세사)

일상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판매물품이 '국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정책적인 목적으로 국산화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납품하는 품목이 국내산일수록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무역거래의 관점에서 '원산지'는 원산지 자체가 목적보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수출하는 물품이 수입국에서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수입국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나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한국산임을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관세율을 적용하려는 목적, 그리고 수입국에서 원산지별로 쿼터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쿼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원산지를 활용한다. 그러나 원산지는 이러한 용도와 별개로 원산지로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정 원산지를 표기해 최종 소비자가 이러한 원산지 정보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번 호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품목 중 '국산'으로 판매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제도인 '국내산 원산지증명제도'를 소개하고, 해당 제도의 취지와 원산지 판정 방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Ⅰ. 국내산 원산지증명제도란?

1. 제도의 취지

기존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인 FTA C/O, 비특혜 C/O 등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즉 수출물품만 대상으로 발급이 가능했다. 원산지증명제도는 수입국에서의 관세 혜택 및 통관 절차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돼 수출되지 않는 내수용 물품은 원산지가 국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발급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국내에서 조립 등 단순가공만 수행하고 국내산

으로 유통하는 품목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내수 거래 물품에 대해서도 최종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을 증명하고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의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를 명확히 판정하고 입증할 서류가 요구됐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내수 유통 물품에 대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국내에서 제조 후 내수 판매되는 모든 품목을 발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 및 식품(제1류~제24류), 의료용품(제30류), 향료 및 화장품(제33류), 종이와 판지(제48류), 서적·신문·인쇄물(제49류), 섬유 원단 및 실(제50류~제58류, 단 제59류 공업용 섬유, 제60류 편직물, 제61류~제63류 의류 제품은 발급 가능), 유리(제70류), 철강(제72류), 차량(제8701호~제8708호, 단 제8709호~제8716호 차량 및 부분품은 발급 가능), 선박(제89류)은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1]된다.

다만, 발급 불가 품목 중 농수산물 등 일부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개별 기관 및 관련 법령을 통해 국산 증빙을 받을 수 있다.

Ⅱ. 원산지 판정

1. 원산지 결정기준(정량적 기준)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신청 물품이 국내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정량적 기준인 세번변경기준(CTSH, Change in Tariff Sub-Heading) 및 부가가치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과 정성적 기준(충분가공원칙)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량적 기준은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충족한다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1항 제2호

원산지 결정기준(정량적 기준)

원산지 결정기준 (둘 중 하나를 선택적 적용)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의 특징
완제품과 수입 원료의 HS Code 6단위가 서로 다르고 (6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비율이 51% 이상일 것 (CTSH + RVC 51%)[2]	•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비율(51%)로 국내산으로 인정 가능 • 완제품에 투입되는 모든 원재료의 HS Code 6단위에 대한 검토 필요 • 완제품과 HS Code 6단위가 동일한 원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원재료는 반드시 국내산이어야 함
세번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비율이 85% 이상일 것 (RVC 85%)[3]	• 원재료의 HS Code를 고려할 필요 없음 • 부가가치비율 85% 충족이 가능한 수준의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해야 함

FTA 원산지증명서와 비교해본다면, FTA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 등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제도는 일반적으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각각 결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산 원산지증명제도는 전 품목에 동일하게 'CTSH + RVC 51%' 또는 'RVC 85%'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제도에는 원산지 판정 특례규정이 없다. 각종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제도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때 가격 또는 중량 기준으로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역외산 원재료의 포함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최소허용기준, De Minimis), 국내산 원산지증명제도에서는 이러한 최소허용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제도는 체약당사국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재료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체약당사국 원산지 원재료를 우리나라 원재료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누적기준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산 원산지증명제도는 제도의 구조상 체약상대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누적기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2. 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

부가가치비율은 완제품 제조원가에서 수입 원재료 금액[4]을 뺀 값을 제조원가로 나눠 백분율로 산출한다. 제조원가 산출 방식은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품목별 판매비와 관리비, 이윤을 공제하는 공제법(BD, Build-Down)을 원칙으로 하되, 공제법 산출이 곤란한 경우[5] 「국가를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2호
4) 수입산인지 알 수 없으나 국내산임을 입증할 수 없는 원재료(원산지 미상 원재료)는 수입산으로 간주하며, 국내에서 공급받았다는 사실이 국내산 원재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신규로 개발한 품목이라 아직 판매가 발생하지 않아 공장도 공급가액을 입증할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가 없거나, 공공입찰 등에서 저가입찰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공급가액인 낙찰가를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마이너스 이윤이 발생해 공제법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6]이 작성한 제조원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직접법을 예외적으로 적용[7]한다. 수입 원재료 금액은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을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적용하며,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해 CIF 가격으로 환산해야 한다.

$$\text{부가가치비율} = \frac{\text{제조원가} - \text{수입원재료 금액}}{\text{제조원가}} \times 100$$

※ 제조원가 : 공장도 공급가액 – (판관비 + 이윤)
※ 수입원재료 금액 : 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부가가치기준은 일반적으로 완제품의 판매가인 FOB 가격[MC법(MC, Maximum Content)은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가격]을 분모로 해 계산하지만, 국내산 원산지증명제도에서는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비,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등도 무형의 부가가치로 인정[8]하는 반면, 국내산 원산지증명제도에서는 부가가치비율 산출과정에서 이러한 무형의 부가가치를 원천적으로 배재한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제법으로 제조원가를 산출하기 곤란해 직접법으로 제조원가를 산출해야 하는 경우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제조원가 총괄표 등으로 제조원가를 입증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실무상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직접법

으로 제조원가를 산출하기 부적절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6)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③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관 또는 학칙의 설립목적에 원가계산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2.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기본재산이 2억원(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일 것

7)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단서규정

8) 공제법(BD) 계산방식에 한정한다. 직접법의 경우 직접원재료의 비율만 부가가치로 인정하므로 원산지국에서 발생한 이윤 및 일반경비는 부가가치로 인정되지 않는다.

으로 산출한 제조원가는 제3자인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산출한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제조원가보고서 형태의 증빙자료가 제시돼야 한다.

3. 충분공정원칙(정성적 기준)

정량적 기준인 세번변경기준(CTSH)과 부가가치비율(RVC)을 충족하더라도 포장, 단순 건조, 세척, 기름칠, 단순 절단 및 혼합 등 단순 가공활동을 초과하는 수준의 공정이 수행돼야 충분공정원칙에 따라 국내산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충분공정원칙 충족 여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9]한다. 해당 조항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적용되는 불인정공정 규정이지만, 국내산 원산지증명제도 역시 이를 준용하고 있으며, 주로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들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제5호 하목에는 "가목부터 파목까지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라는 잔여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제8항 각 호에 명시하는 가공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단순한 가공활동이라면 불인정공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하목에 주로 해당하는 가공으로는 '단순조립'이 있을 수 있는데, 단순조립 등 '단순한 가공활동'의 '단순한'이란, 이러한 조립이나 가공을 할 때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설비가 요구되지 않는다면 모두 단순한 활동으로 본다는 의미다.

4. 완전생산기준 적용물품

앞서 소개한 국내산 원산지증명제도의 원산지 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10] 즉, 국내산 원산지증명제도에서 천일염은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을 충족해야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11]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확약서, 국내 소금검사 확인증, 천일염 이력제 보안라벨, 소금제조업 허가증 또는 천일염전 사용허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9)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1항 제1호
10)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3항
11)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 충족이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가치기준 충족보다 훨씬 어렵고 그 증빙절차도 복잡하다. 특히, 기계류, 공산품 등과 같이 많은 종류의 원재료가 투입되는 품목의 경우 모든 원재료가 국내산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5. 원산지 표시제도와의 관계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산의 국내산 허위 표시, 표시 손상 및 변경, 미표시 행위를 단속한다. 수입 원재료를 가공해 국내에 판매하는 물품의 국산 표시 적정성을 판정할 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C/O 발급과 원산지 표시제도는 밀접하게 연계[12]돼 있다. 따라서 수입 원재료를 활용해 제조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국내산'을 표기하려면 대상 물품에 대해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현품에 표시되는 국산 원산지에 대해 국내산 원산지증명서가 입증서류로 활용[13]될 수 있다.

6.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원산지증명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대상 품목의 국내산을 계속 증명해 준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는 기본적으로 판매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발급되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판매에 한정해 국내산을 증명할 뿐이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다음 판매에서는 별도의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증명의 효력이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증명서상 발급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국내산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100개 품목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거래에서 150개 품목을 판매하더라도 국내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품목은 100개로 한정된다.

또한 판매가격과 판관비, 이윤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지난 분기에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품목이라도 이번 분기 거래에서는 제조원가가 줄어들어 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같은 관점에서 동일한 수입 원재료의 단가가 오르거나 환율이 급등해 수입 원재료 금액이 급증하면 부가가치비율이 변동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원산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국내산 원산지증명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1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4항
13) 관세청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대상 물품에 대해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Ⅲ. 직접생산확인 증명제도와의 비교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납품이나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96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수 서류로 활용돼 왔다. 해당 증명서는 대상 제품을 해당 기업이 직접 생산했음을 확인해 주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이나 공공기관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 요건이 되거나 가점을 부여받는 용도로 쓰인다.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물품 및 공공조달 혁신시제품 등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별개로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 두 제도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증명서의 본질적인 개념 차이와 동시 제출 요구의 배경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두 제도의 차이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조달청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필수공정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생산설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는 '생산자 및 공정 수행 주체' 중심의 증명이다. 반면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한 후 유통되는 물품 중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 한국산으로 인정됐음을 증명하는 '물품 및 원산지 기준' 중심의 서류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 활동을 거쳤다는 사실이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원산지로 인정받으려면 원재료가 완제품으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이뤄져야 한다. 반면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원재료와 완제품 간 세번(HS Code) 변경 여부보다는 지정된 설비를 활용해 필수공정을 실제 수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2. 사례 비교

직접생산확인 증명제도에서 이동식상용 및 산업용조립구조물(컨테이너하우스)[14]의 경우 철판, 파이프, H빔 등 철강재를 보유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절단, 용접, 천공, 연마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기만 하면 직접생산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외에도 사업자등

1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2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62

록, 공장등록, 생산설비(절단기, 용접기, 천공기, 연마기 등), 생산인력(상시근로자 3인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직접생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국내산 원산지증명제도의 관점에서는 절단, 용접, 천공, 연마 등 직접생산확인 증명제도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공정만 수행한다면 경우에 따라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손목시계(휴대용시계)의 경우 시계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은 무브먼트이지만, 국내 무브먼트 생산 인프라가 부재한 현실을 고려해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는 무브먼트 자체 제조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산 무브먼트로 조립 및 검사 공정만 수행해도 직접생산확인기준은 충족[15]할 수 있으나, 원산지 판정 기준상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16]

임가공 위탁 생산 시 인정 기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원산지증명제도는 국내 다른 업체에 임가공을 위탁해 생산했더라도 국내 영역 내에서 실질적 변형 공정이 일어났다면 위탁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다. 반면 직접생산확인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공정을 수행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므로, 외주 임가공 위탁생산을 진행한 경우 직접생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3. 각 제도의 취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기관에 제품을 조달하는 당사자가 지정된 필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실제로 수행하는지 검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반면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제품조달 절차에서 국산 물품을 우대해 산업 분야의 국산화를 장려하고,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해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제도는 '생산을 위한 설비와 기술, 인력' 보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내산 원산지증명제도는 '원재료의 변형과 이를 위한 충분가공'에 집중한다.

두 제도는 얼핏 비슷한 제도로 보일 수 있으나 그 목적이 분명히 다른 제도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다만 MAS 계약 등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두 제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공조달 등의 시행을 주관하는 기관은 기업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서류의 상호 호환, 현장확인 절차 간소화 등 절차적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유관기관 간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2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166

16) 수입산 무브먼트를 활용해 조립, 각인 등의 공정을 거쳐 시계를 생산하더라도 단순한 조립활동만 수행한 것으로 봐 국내산으로 불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Ⅳ. 마치며

국내산 원산지증명제도는 그동안 수출입물품에 한정돼 있던 원산지증명제도를 국내에서 제조돼 유통되는 내수물품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국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전까지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현품에 기재하는 '국산'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단속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이라는 사후적 조치밖에 없었으나, 국내산 원산지증명제도는 판매 과정에서 증명서 발급을 통해 사전적으로 국산 원산지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산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품목에 동일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품목별·산업별로 상이한 개별 시장환경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산업별로 완제품과 원재료가 분류되는 품목 분류 체계가 다를 수 있고 현실적으로 충족 가능한 부가가치비율도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산업별 현실을 세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급대상도 확대가 필요하다. 농수산물 등 일부 품목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국산품 관리가 필요할 수 있겠으나 조제식품과 제8708호의 차량 전용 부분품은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품목으로 보인다.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원산지가 관리되는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충분한 발급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부가가치비율 산출에서 공제법으로 제조원가를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직접법으로 제조원가를 산출하는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제조원가보고서로만 직접법의 제조원가를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원가보고서는 기업 부담이 적지 않다. 신규품목은 공장도 판매가격이 아직 없어 직접법으로밖에 제조원가를 산출할 수 없지만, 신규품목이기에 국내산 원산지증명서가 더욱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법 제조원가 산출 시 제조원가보고서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다른 선택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I 커닝’ 논란의 스마트안경 품목분류는 어떻게 될까?

김 성 채 | PwC 관세법인

Ⅰ. 들어가며

시대의 역설가 길버트 체스터턴은 안경에 대해 유명한, 그러나 지금의 시각으로 보자면 다소 고지식한 명언을 남겼다.

“안경의 발명은 노인들이 더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해 젊은이들이 세상을 망치는 것을 방지했다.”

그러나 100여 년 전 그가 예견한 안경의 역할이 오늘날 스마트글라스에 의해 전복되고 있다.

> 올해 서울·전북·제주의 중·고교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학생들이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교육부는 … <중략> …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
> 출처: 중앙일보 기사(2026.11.9.)

‘커닝’이라는 고색창연한 단어는 ‘cunning’이 아니라 ‘cheating’이 맞다는 영어선생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살아남았다. 심지어 표준국어대사전에까지 ‘시험을 칠 때 부정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커닝의 기술 또한 날로 진화해 감독관의 눈을 피해 소매나 볼펜 속에 쪽지를 숨기던 아날로그 시대의 낭만은 박물관으로 가버렸고, 이제는 안경다리를 지그시 누르는 세련된 손가락 끝에서 고도의 정보전이 펼쳐진다. 시력 보호라는 엄숙한 명분을 쓴 채 코끝에 걸린 첨단 기술은 가장 은밀하고도 스마트한 반칙의 무기가 됐다.

결과에 대한 기대와 실현능력의 차이가 커닝을 부르는 것이지만, 그래도 시험은 실력대로 치르고 결과는 결과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스마트안경(Smart Glasses)은 어떤 장치이길래 시험장에서 부정행위에까지 사용될까?

Ⅱ. 스마트안경의 품목분류

1. 스마트글라스는 복합기계인가?

스마트글라스는 안경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로, 투명한 렌즈를 통해 사용자에게 스마트폰의 기능,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정보, 실시간 시각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첨단 장치다. 즉, 관세율표 제9004호의 안경에 다른 여러 호의 기능을 하는 비교적 소형의 디바이스를 체화시킨 물품이다.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 주 제3호(복합·다기능기계)와 제4호(기능단위기계)의 규정을 제90류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9004호의 안경에 제16부 몇몇 호의 기능을 추가한 물품을 복합기계 또는 다기능기계로 볼 수 있을까?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5호는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84류와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기계류·설비·장비·장치·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식적인 의미의 기계로 범위를 확장한다면 제17부의 수송기기나 제90류의 각종 측정 및 분석장비, 제91류의 시계 등도 기계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스마트글라스를 복합기계 또는 다기능기계로 본다는 것은 제9004호의 안경을 기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해석과 이어진다. 제9004호에는 안경테의 렌즈나 유리가 부착된 물품이 분류되며, 시력교정용이나 보호용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스마트글라스의 원형이라 할 수는 없겠으나, 2007년 우리나라는 MP3 기능을 장착한 스포츠용 선글라스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바 있다.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사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867(2007년 2월 27일)
결정 세번	제9004.10-9000호
품명	MP3 Sunglasses; XONICS CLASSIC
물품 설명	ㅇ 물품 구성 - 오른쪽 안경테 끝 부분을 직육면체로 성형한 후에 MP3 player 내장 - 선글라스 렌즈를 밑 부분에서 위로 밀면 약 90도 각도로 오픈됨 - 안경테 양끝 부분에서 이어폰(길이 약 10cm) 2개가 고정식으로 부착됨 ㅇ 선글라스 재질: 중간에 편광필름, 양면에 플라스틱으로 성형한 후 빛 입사면 쪽에 자외선 방지막을 코팅한 것 ㅇ MP3 player 사양 - 저장용량: 512M - 전원: Rechargeable lithium ion battery ··· <중략> ··· ㅇ 가격 구성비: 선글라스 70% / MP3 30%(제조원가: $25/Ea) ㅇ 용도: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음악 감상)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9004호는 “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이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눈부신 빛으로부터 눈의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분류하며 ; 또한 입체영화관람용의 안경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물품은 스포츠 레저 등 활동 시 눈을 보호하기 위한 선글라스에 MP3 player를 결합한 복합물품으로서 외형상 선글라스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스포츠, 레저 활동 시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하면서 MP3 player를 사용하게 돼 있으며, 가격구성비에서도 선글라스가 70%, MP3 player가 3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선글라스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함. 따라서「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3호 나목을 적용해 선글라스가 분류되는 제9004.10-9000호에 분류됨.

위 결정사례에서는 분류근거로 제90류 주 제3호가 아닌「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3호 나목을 사용했다. 즉, **이 물품을 복합기계로 본 것이 아니라 통칙 제3호에 나목에 따른 복합물품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선글라스에 MP3 기능을 장착한 복합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MP3가 아닌 선글라스라고 본 것이다.

MP3 기능이 장착된 선글라스



MP3 뮤직플레이어와 헤드폰이 내장된 선글라스 예시(출처: 옵틱스 플래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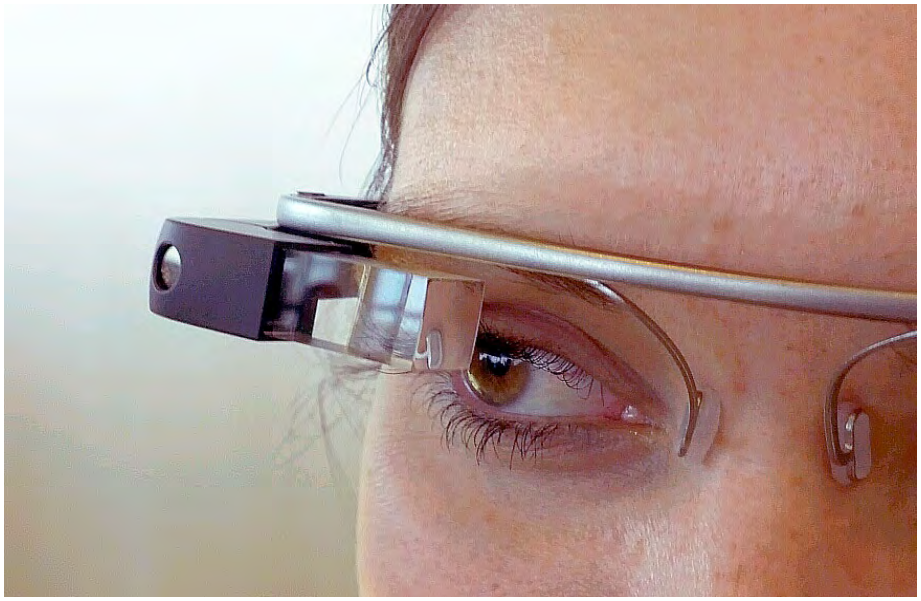
품목분류 관점에서 보자면 복합물품에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와 복합기계에서 주기능은 큰 차이가 없다. 즉,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할 것이나 위 사례의 시사점은 제9004호의 안경을 복합기계의 구성단위를 이루는 기계의 하나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스마트글라스의 효시 - Google Glass

현재 유행하는 스마트글라스의 효시(시초)라고 할 만한 제품은 구글이 2012년에 처음 공개하고 2013년에 개발자 버전을 출시해 '웨어러블 스마트안경'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각인시킨 '구글 글래스(Google Glass)'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글 글래스는 한쪽 눈앞에 디스플레이와 카메라가 돌출된 비대칭형 디자인의 스마트글라스로 광학 프리즘 투사 방식을 사용한 전방시현기(HUD, Head-up Display)를 채택했다. 디스플레이에는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동된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받은 GPS 신호, 문자 메시지, 전화 수신 알림, 외부 앱 데이터 등을 표시했다.

구글이 2013년 공개한 스마트안경 '구글 글래스'



렌즈 위 소형 카메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사진: Loïc Le Meur, Wikimedia Commons, CC BY 2.0)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이외에 음성인식 UI(VUI, Voice User Interface), 골전도 스피커, 모션 센서 등을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분류 관점에서 이 제품은 제8517호, 제8525호, 제9004호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미미한 판매실적으로 인해 국제적 관세 또는 품목분류 분쟁 사례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만 낳고 조용히 시장에서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어러블 복합기기 분류 시 '무선 통신 기능'을 본질적 특성으로 규정하는 법리적 원형(Prototype)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3. 스마트글라스의 최근 품목분류 동향

스마트글라스가 스마트폰을 이어 우리 일상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차세대 컴퓨팅 디바이스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스마트글라스의 최종 목적지와 형태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스마트글라스의 용도와 기능도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글라스의 품목분류를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르거나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품목분류 관점에서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스마트글라스는 대표적인 융복합 물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한 HS 품목분류표의 개정이 없는 한 스마트글라스는 그 구성요소, 용도, 기능 등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기나 디바이스로 분류되거나 아니면 분류 가능한 호 중에서 최종 호로 분류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는 시장에서 동일하게 스마트글라스로 불리는 물품이라 해도 결국 제조자의 의도나 사용자의 목적상 가장 중요한 요소에 따라 각기 달리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도 있다.

현 단계에서 스마트글라스를 용도에 따른 범주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① 오디오, 카메라와 AI

현재 삼성과 메타를 중심으로 대중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가장 주류의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안경테의 무게와 디자인을 일반 안경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디스플레이를 과감히 제거했고, 초소형 카메라 모듈, 고성능 다중 마이크, 귀 주변으로 소리를 모아주는 지향성 스피커, AI 칩셋 등을 장착했다.

착용자가 바라보는 시선이나 외부 음성을 카메라와 마이크로폰이 인식하고 AI를 이용해 외국어를 번역해 주거나 실시간 질문에 대답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 경우 AI와 관련된 컴퓨팅 기능은 스마트글라스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연동되는 스마트폰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다. 앞서 인용한 시험 부정행위 관련 기사에서 나오는 스마트글라스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물품들은 카메라와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정보의 획득이나 촬영기능이 중요한지 또는 스마트폰과 같은 본체와의 통신이 중요한지의 관점에 따라 제8517호나 제8525호가 경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를 들어, 이 범주의 스마트글라스로서 스마트워치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경우라면 제8525호보다는 제8517호의 비중이 더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물론 그 외에도 제9004호는 항상 따라붙는 옵션이 될 수 있음).

■ 오디오, 카메라와 AI 스마트글라스 국내외 분류 사례

HS 분류 결과	품명 및 이미지	물품설명
제8525.89호 (2022년, 한국)	RAY-BAN STORIES (WAYFARER); RW4002 	◦ 웨어러블(wearable) 전자기기로, 얼굴에 착용하는 선글라스에 디지털 카메라와 스피커, 마이크로폰 등이 내장돼 있음. 2개의 스피커와 3개의 마이크, 2,592×1,944 픽셀 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 500만화소의 초소형 카메라가 안경테 좌우 위쪽에 2개 있음. … <중략> … 스마트폰과 연동해, 핸즈프리 이어폰처럼 통화도 가능하며, 스피커를 통해 음악 감상도 가능함(음질은 일반 스피커보다 낮은 편임). … <중략>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상이나 사진 촬영 시 LED 표시등이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설정돼 있음(카메라 렌즈 위쪽 2개, 사용자 임의변경 불가).
제8517.62호 (2026년, 독일)	Smart Glasses	◦ Wifi, Bluetooth, 메모리, 마이크와 스피커 등 장착 ◦ 모바일폰과 연동해 핸즈프리 기능 제공 ◦ 최대 30초간 동영상 녹화 ◦ 보조적 용도로 선글라스로 사용

② 스크린 미러링 또는 증강현실

이러한 범주의 물품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화면을 안경 안의 가상 대화면으로 띄워주는 휴대용 디스플레이 특화 안경이다. 엄밀히 말하면 독자적인 AI나 통신 기능보다 '눈앞에 쓰는 모니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고해상도의 마이크로 OLED[1] 패널이나 HUD[2]를 채용한 물품이다. 영상을 USB 등의 단자로 입력받는다면 통신기능은 미미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물품은 대체로 제8528호로 분류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 스크린 미러링 또는 증강현실 스마트글라스 국내외 분류 사례

HS 분류 결과	품명 및 이미지	물품 설명
제8528.52호 (2025년, 한국)	XREAL ONE AR GLASSES 	◦ 0.68인치 크기의 두 개의 Micro OLED, 프로세서, 센서 등이 내장된 안경 형태의 물품으로 USB-C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게임기 등과 연동돼 화면 미러링으로 실시간 가상화면을 제공 ※ 신청 물품은 외부장치 연결 없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작동(Stand alone) 불가 ◦ 기능: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기 등과 USB-C 포트를 통해 연동돼 최대 147인치 크기의 가상화면을 제공하는 화면 미러링 기능
제8471.49호 제8471.50호 (2026년, 미국)	XREAL Aura Augmented Reality (AR) smart glasses and computing puck	XREAL AR 스마트글라스 및 이와 연결해 사용하기 위한 Computer Puck이 번들형태로 함께 제시됨.
제8528.52호 (2026년, 미국)	ASUS AirVision M1 Glasses 	◦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 0.49인치 micro-OLED 스크린을 갖추고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기와 연결하기 위한 DP 단자 등 형성 ◦ 내장된 OS는 갖추고 있지 않음.
제8528.52호 (2026년, 폴란드)	Glasses with a built-in display system	◦ 외부 소스로부터 들어온 디지털 영상을 출력하는 0.6인치 두 개의 Micro-OLED 스크린을 갖춘 휴대형의 모니터 ◦ 201인치 가량의 가상화면 제공 ◦ 빌트인 스피커를 갖추고 있으나 TV 신호를 수신하거나 자체적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재생 불가

1) 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 유기발광다이오드
2) HUD(Head-Up Display): 항공기, 자동차 등 앞 유리창에 정보를 표시해주는 증강현실 장치

③ 증강현실 및 독립 컴퓨팅

이 범주는 테크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글라스에 가깝다. 현실 세계와 디지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결합함은 물론 스마트폰과 같은 본체와의 연동 없이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물품이다. 현재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에 있기는 하나 향후 가장 큰 폭의 발전이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물품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체적으로 OS[3]를 내장한 하드웨어의 존재일 것이다. 그 밖에 세부적인 용도와 목적에 따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와 다수의 센서와 카메라를 내장할 수도 있다.

이 물품들을 품목분류 할 때는 **그 자체로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6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네트워크 또는 입력장치를 통해서 기기에서 스스로 제3자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하고 삭제할 수 있는지가 독립된 컴퓨팅이 가능한지의 핵심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 증강현실 및 독립 컴퓨팅 스마트글라스 국내외 분류 사례

HS 분류결과	품명 및 이미지	물품설명
제8471.41호 (2018년, 독일)	Calculator, so-called Smartglasses 	◦ CPU, 3GB RAM, 64GB 고정메모리, 그래픽 및 오디오 컴포넌트, WLAN, Bluetooth ◦ 2개의 디스플레이, 터치식 컨트롤, 카메라 및 마이크, USB 포트 ◦ 사용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프로그래밍

그 밖에도 스마트글라스가 각종의 센서를 장착해 산업현장 등에서 여러 가지 측정 및 검사 기능을 사용자에게 즉석에서 시각정보로 제공하는 용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제9031호에 분류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OS(Operating System): 운영체제

상대의 힘을 측정하는 기기는 아마도 제9031호?



출처: AI 생성 이미지

Ⅲ. 맺음말

앞서 말한 것처럼 스마트글라스는 이제 막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앞으로도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품목분류를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르거나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모델의 스마트글라스에 대해 각국의 품목분류 상이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마트글라스에 대한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과 맥락을 수립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스마트글라스의 품목분류 논의가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물품,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 형태의 융복합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논의 및 HS 개정 논의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늘 그렇듯이 우리나라 업계가 주도하는 신상품에 대한 국제적 레벨에서의 품목분류 논의를 선도하는 것이 미래의 HS 개정 논의를 한국 정부가 선점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토끼털 목도리의 HS Code
인조섬유의 머플러vs.모피 의류 부속품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토끼, 족제비, 여우 등 여러 종류의 모피는 코트, 목도리 등 겨울철 방한용뿐만 아니라 패션 아이템으로 많이 사용됐다. 특히 부드러운 느낌이 좋은 토끼털 목도리는 많은 인기를 끌었다.

요즘은 기술이 발전하고, 동물보호를 위해 천연 모피 대신 인조 모피로 만든 '에코퍼' 제품이 많이 나와 대부분의 토끼털 목도리가 천연 모피와 유사하게 만든 인조 모피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진짜 토끼털로 만든 목도리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천연 모피와 인조 모피가 부드러움이나 포근함 등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이번 겨울에는 동물보호를 위해 '에코퍼'를 구매해보는 건 어떨까?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천연 토끼털로 만든 목도리로 제6117.10-4000호 '인조섬유의 머플러'로 신고됐다.

관세율표 제4303호에는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이 분류되며, 제4303.10-2200호에는 '의류 부속품' 중 '토끼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모피, (B) 모피로 안을 댄 그 밖의 재료, (C) 모피를 외측에다 붙인 그 밖의 재료[단순히 트리밍(trimming)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만든 의류·의류의 부분품과 부속품[머프(muff)·모피목도리(stole)·타이(tie)·칼라(collar) 등]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차목에서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와 모피(제41류·제43류), 제4303호나 제4304호에 해당하는 모피제품·인조 모피와 그 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천연 모피로 만든 의류 부속품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303.10-22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Of man-made fibres	제6117.10-4000호 A 13%	other articles of furskin	제4303.10-2200호 A 16%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2026 개정판
관세법령집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등 신규 수록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구성**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관세 · 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